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노용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9645

발의연월일: 2023. 1. 26.

발 의 자:노용호・구자근・최승재

정우택 • 이양수 • 박대수

권성동・지성호・이 용

한기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강원도의 지역적·역사적·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「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」이 제정되어 2023 년 6월 11일, 강원특별자치도가 본격 출범하게 됨. 향후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특례 조항 반영을 위해 정부 부처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며 강원특별자치도만의 강점 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이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.

하지만 현행법은 자치조직권 확대 및 재정 확대 등 지위특례와 권한특례에 대한 선언적 의미만 담겼을 뿐, 구체적인 특례조항은 부족함.

이에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강원도 수부도시인 춘천시의 발전을 위해 첨단산업 연구개발특구, 교육자유특구, 규제자유특구등을 핵심 특례 과제로 선정, 권한이양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.

아울러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사회협약, 해외협력, 국가공기업과의 협조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자 함(안 제10조의4부터 제10조의1 1까지,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신설).

법률 제 호

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887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를 제26조로 하고, 제10조의4부터 제10조의11까지,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0조의4(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례) ①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은 강원자치도에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 한 규제특례법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규제자유특구가 우선적으로 지정·운영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 - ②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제86 조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부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외의 지역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 사업 등에 협력하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.
 - ③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제81 조제2항에 따라 강원자치도 내의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 구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4조제2항 및 제7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획의 공고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고.

-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검토 결과 회신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.
- ④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제86 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 내의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은 4년의 범위에서 정하되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제10조의5(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) ①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 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제5조, 제6조제3항, 제9조제2항, 제10조제1항, 제11조제1항 및 제2항, 제14조제2항, 제15조, 제16조제 1항 및 제2항, 제18조제3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중앙행 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.
 - ②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제9 조제1항제10호, 제11조제2항·제4항, 제16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- 제10조의6(강원특화발전특구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특례) ① 「규 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강원특화발전특구(이하 "특화특구"라 한다)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 으로 강원특화발전특구위원회(이하 "특화특구위원회"라 한다)를 둔 다.

- 1. 특화특구의 지정 ·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
- 2. 특화특구계획에 관한 사항
- 3. 규제특례의 적용·변경·취소에 관한 사항
- 4. 특화특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 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특화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
- ② 특화특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당연직 위원과 10명 이내의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특화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, 당연직 위원은 특화특구와 관련된 실국의 국·과장급 공무원이 되며, 위촉위원은 특화사업과 지방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한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특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, 위원임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.
- 제10조의7(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·의결 시 고려사항) 특화특구위 원회는 제10조의6제1항에 따른 심의·의결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 - 1. 특화사업과 지역의 특성 · 여건의 적합성
 - 2. 신청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규제특례와 특화사업의 연관성
 - 3. 특화사업의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등의 확보

- 4. 특화사업에 대한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유치 가능성
- 5.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
- 6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·군기본계획 에 적합한 정도
- 7. 지역주민ㆍ기업 등의 특화특구 및 특화사업에 대한 의견
- 8. 그 밖에 특화특구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써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
- 제10조의8(투자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) ① 도지사는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에 한하여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투자선도지구로 우선 지정·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.
 - 1. 「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광지역
 - 2. 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
 - 3.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
 - 4. 「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역세 권개발구역
 -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자선도지구에 대하여는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5조제7항·제8항 및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

를 적용한다.
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자선도지구에 대하여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으 로 보아 이에 따른 재정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자선도지구의 지정·변경 또는 해제의 기준·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.
- 제10조의9(강원과학기술원 설립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, 데이터활용 융복합산업, 정밀의료기기 등 첨단과학기술분야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과 국내외 및 산업계와의 교육·연구교류를촉진함으로써 지역의 취약한 과학기술기반을 해소하고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에 강원과학기술원을 설립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강원과학기술원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- 제10조의10(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의 지정 및 관리)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첨단지식산업 분야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인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(이하 "과학기술단지"라 한다)를 지정할 수 있다.
 - ② 과학기술단지의 지정은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

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. 이 경우 도지사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자를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과학기술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,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추천한 개발사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.
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학기술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. 이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는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 다.
- ④ 과학기술단지의 관리는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절차에 따른다. 다만,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에게 과학기술단지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- ⑤ 국토교통부장관은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된 기존 산업단지를 과학기술단지로 전환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⑥ 국가는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단지의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반시설(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사업자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전용 시설을 포함한다)은 국가와 강원자치도가 직접 설치·운영할 수 있

다.

-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조성된 과학기술단지를 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6조에 따른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우선적으로지정하여야 한다.
- 제10조의11(연구개발특구 지정 특례) ① 국가는 강원자치도에 있는 대학·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,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,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4조제2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강원자치도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있다.
- 제11조의2(교육자유특구)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일정 지역을 창의적인 교육환경을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는 미래형 교육 및 지역특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자유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.
 - ② 교육자유특구 지정·변경·해제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.
- 제11조의3(자율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) ① 교육자유특구에 소 재하는 국립·공립·사립의 초·중·고등학교는 「초·중등교육 법」 제8조, 제19조제4항, 제21조제1항, 제22조제2항, 제23조제2항·

- 제3항, 제24조, 제26조제1항, 제29조, 제31조, 제39조, 제42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(이하 "자율학교"라 한다)을 운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서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.
- ③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·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사람은 각각 초등학교·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.
- 제11조의4(특성화 학교 지정) 교육자유특구 내에 소재하는 국립·공립 ·사립의 초·중·고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 는 학교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.
 - 1.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
 -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와 국
 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
 - 3.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와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
- 제11조의5(국제학교 설립 등) ① 국가·강원자치도 및 시군, 학교법인은 교육자유특구 내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(이하 "국제학교"라 한다)를 설립·운영할 수 있다.

- ② 국제학교는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학교 간 상호 병설 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제23조(사회협약) ① 도지사는 자율과 합의로 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사회협약이 체결될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 -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사회협약의 체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 - 1. 직능별 사회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
 - 2. 주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사항
 - 3.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사회협약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 - ③ 사회협약을 체결할 때 예산이 수반되거나 주민의 권리제한, 의무부과와 관련된 사안은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 - ④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 사회협약이 체결되거나 사회협약위원 회가 중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 다.
- 제24조(해외협력) 강원자치도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경제·문화·교육·과학·기술·체육·환경·관광 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·교류할 수 있다.
- 제25조(국가공기업의 협조) ① 도지사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

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등(강원자치도에 소재한 기관에 한정하며, 이 하 "국가공기업"이라 한다)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-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가공기업과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분야 별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가공기업의 범위와 협조에 관한 사항 및 발전협의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18875호	법률 제18875호
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	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
특별법	특별법
<u><신 설></u>	제10조의4(규제자유특구 지정 및
	운영에 관한 특례) ① 중소벤
	<u>처기업부장관은 강원자치도에</u>
	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
	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
	제2조제13호에 따른 규제자유
	<u>특구가 우선적으로 지정·운영</u>
	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
	<u>여야 한다.</u>
	②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
	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
	법」 제86조제1항에 따른 실증
	특례의 부여를 요청하는 경우
	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
	따라 규제자유특구 외의 지역
	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사업
	등에 협력하는 자를 포함할 수
	있다.
	③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
	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

법」 제81조제2항에 따라 강원 자치도 내의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변 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 74조제2항 및 제7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획의 공고 기 간은 15일 이상으로 하고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균형 발전위원장의 규제자유특구계 획의 검토 결과 회신 기간은 1 5일 이내로 한다.

④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제86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 내의 규제자유특구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은 4년의 범위에서 정하되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한 차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있다.

제10조의5(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) ①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제5조, 제6조제3 항, 제9조제2항, 제10조제1항, 제11조제1항 및 제2항, 제14조

<신 설>

제2항, 제15조, 제16조제1항 및 제2항, 제18조제3항에 따른 중 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.

②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제9조제1항제10호, 제11조제2항·제4항, 제16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8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
제10조의6(강원특화발전특구위원 회 설치·운영에 관한 특례) ①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 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 법」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에 도 불구하고 강원특화발전특구 (이하 "특화특구"라 한다)에 관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 속으로 강원특화발전특구위원 회(이하 "특화특구위원회"라 한 다)를 둔다.

투화특구의 지정·지정해제
 에 관한 사항

- 2. 특화특구계획에 관한 사항
- 3. 규제특례의 적용·변경·취 소에 관한 사항
- 4. 특화특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사항
- 5. 그 밖에 특화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
- ② 특화특구위원회는 위원장 1 명, 당연직 위원과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특화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, 당연직 위원은 특화특구와 관련된 실국의 국 ·과장급 공무원이 되며, 위촉 위원은 특화사업과 지방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 람 중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바 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한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
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특구위
 원회의 구성 및 운영, 위원임기
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
 정한다.

<u><</u>신 설>

- 제10조의7(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·의결 시 고려사항) 특화 특구위원회는 제10조의6제1항 에 따른 심의·의결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야 한다.
 - 1. 특화사업과 지역의 특성 · 여건의 적합성
 - 2. 신청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규제특례와 특화사업의 연관성
 - 3. 특화사업의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등의 확보
 - 4. 특화사업에 대한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유치 가능성
 - 5.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
 - 6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・군기본계획에 적합한 정도
 - 7. 지역주민·기업 등의 특화특 구 및 특화사업에 대한 의견
 - 8. 그 밖에 특화특구지정 시 고 려하여야 할 사항으로써 도조 데로 정하는 사항

제10조의8(투자선도지구의 지정

<신 설>

에 관한 특례) ① 도지사는
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
법률」 제45조제1항부터 제5항
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에 한하여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거나
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국토교통
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투자선도지구로 우선 지정・변경
또는 해제할 수 있다.

- 1. 「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

 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

 른 폐광지역
- 2.
 접경지역
 지원
 특별법」

 제2조제1호에
 따른
 접경지역
- 3.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낙 후지역
- 4. 「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

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

 른 역세권개발구역
-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자선도지구에 대하여는 「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5조제7항・제8항 및 제46조

부터 제51조까지를 적용한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자선도지구에 대하여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 른 낙후지역으로 보아 이에 따 른 재정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자 선도지구의 지정·변경 또는 해제의 기준·절차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 한다.

제10조의9(강원과학기술원 설립)

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, 데이터활용 융복합산업, 정밀의료기기 등 첨단과학기술분야의 혁신을 선도할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과 국내외 및 산업계와의 교육·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의 취약한 과학기술기반을 해소하고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에 강원과학기술

원을 설립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강원과학기술원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제10조의10(강원첨단과학기술단 지의 지정 및 관리) ① 국토교 통부장관은 첨단지식산업 분야 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 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 하여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」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 지인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(이 하 "과학기술단지"라 한다)를 지정할 수 있다.

② 과학기술단지의 지정은
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
률」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
지정과 개발에 관한 절차에 따
른다. 이 경우 도지사는 같은
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
개발사업자를 추천하여 국토교
통부장관에게 과학기술단지의
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, 국토
교통부장관은 같은 법 제16조
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

추천한 개발사업자를 사업시행 자로 지정할 수 있다.
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학기술 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지원위 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. 이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는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」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 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.
- ④ 과학기술단지의 관리는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절차에 따른다. 다만,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같은 법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에게 과학기술단지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- ⑤ 국토교통부장관은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된 기존 산업단지를 과학기술단지로 전환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⑥ 국가는 「산업입지 및 개발

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도 불 구하고 과학기술단지의 기반시 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반시설(과학기 술단지에 입주한 사업자가 단 독으로 사용하는 전용시설을 포함한다)은 국가와 강원자치 도가 직접 설치・운영할 수 있 다.

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지 사와 협의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조성된 과학기술단지를 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 법」 제16조에 따른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우선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

제10조의11(연구개발특구 지정 특례) ① 국가는 강원자치도에 있는 대학·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, 상호협력 을 활성화하며, 연구개발 성과 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 다.

<신 설>

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4조제2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강원자치도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.
- 제11조의2(교육자유특구) ① 도지 사는 강원자치도의 일정 지역 을 창의적인 교육환경을 유연 하게 도입할 수 있는 미래형 교육 및 지역특화 교육환경 조 성을 위한 교육자유특구로 지 정할 수 있다.
 - ② 교육자유특구 지정·변경· 해제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.
- 제11조의3(자율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) ① 교육자유특구 에 소재하는 국립·공립·사립 의 초·중·고등학교는 「초· 중등교육법」 제8조, 제19조제4 항, 제21조제1항, 제22조제2항, 제23조제2항·제3항, 제24조, 제26조제1항, 제29조, 제31조, 제39조, 제42조 및 제46조를 적

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(이하 "자율학교"라 한다)을 운영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서 적용되지 아니하 는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.
- ③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에 따른 초등학교·중학교 또 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자율 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 수한 사람은 각각 초등학교·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.

제11조의4(특성화 학교 지정) 교육자유특구 내에 소재하는 국립·공립·사립의 초·중·고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.

- 1.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 계열
- 2.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

<신 설>

학교와 국제 전문 인재 양성 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 교

3.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 열의 고등학교와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제11조의5(국제학교 설립 등) ① 국가・강원자치도 및 시군, 학교법인은 교육자유특구 내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(이하 "국제학교"라 한다)를 설립・운영할수 있다.

② 국제학교는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학교간 상호 병설 또는 통합하여운영할 수 있다

제23조(사회협약) ① 도지사는 자율과 합의로 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사회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 야별 사회협약의 체결과 관련

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의견을 듣기 위하여 도조례로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・운영할 수 있다.

- 1. 직능별 사회협약 체결에 관 한 사항
- 2. 주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사항
- 3.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사회협

 약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

 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

 사항
- ③ 사회협약을 체결할 때 예산 이 수반되거나 주민의 권리제 한, 의무부과와 관련된 사안은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④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 사회협약이 체결되거나 사회협 약위원회가 중재한 사항에 대 해서는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.

제24조(해외협력) 강원자치도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경제・ 문화・교육・과학・기술・체육 ・환경・관광 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・교류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	설>
` L	

제25조(국가공기업의 협조) ① 도 지사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등(강원자치도에 소재한 기관 에 한정하며, 이하 "국가공기 업"이라 한다)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-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 가공기업과의 업무협조를 위하 여 분야별 발전협의회를 구성 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가공기업의 범위와 협조에 관한사항 및 발전협의회의 구성・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u>제23조(벌칙)(생</u>략)

<u>제26조(벌칙)</u> (현행 제23조와 같음)